

시원스런 하조대 등대 천혜의 절경 빛어내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시원스런 하조대 등대
천혜의 절경 빛어내다

시원스런 동해바다가 생각날 즈음
하조대는 늘 그대로 사람을 맞는다
기암괴석과 애국송이 조화를 이룬
그곳에 하조대 등대가 자리한다.

봄에는 푸르름이 다가오고
여름엔 하얀포말로 넘실대고
가을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겨울엔 새하얀 눈꽃이 이는 곳.

시리도록 눈부신 동해바다
언제나 그자리 그곳에서
어우러져 절경을 빛어낸다.

지 면 안 내

- 2면 송이현장체험 5일간만 운영키로
- 5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⑤
- 8면 거소투표제도 안내
- 11면 양양우체국 '3중5분' 실천 다짐
- 3면 양양 해담마을 구름다리 관광명소 기대
- 6면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 9면 개표절차 안내
- 12면 생활정보
- 4면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주)' 창단 무대공연 화제
- 7면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 10면 군정종합

송이현장체험 5일간만 운영키로

올해 양양송이축제 10월 1~5일 개최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양양송이축제가 오는 10월1~5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는 지난달 24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세부 행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지난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양양송이와 사랑애 빠지다'를 주제로 주 무대인 남대천 둔치와 양양전통시장·송이산지·송이

벨리 등지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주요 행사로 산신제와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를 비롯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및 송이보물찾기와 문화예술행사, 맛 체험, 상설 및 거리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지난해 20일간 운영했던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및 송이보물찾기를 축제기간인 5일간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판매와 체험비를 받는 행사장 내 부스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지난해에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올해는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 1인당 1부스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행사는 산신제로 대체하고 세부행사로 탁장사대회, 송천떡만들기, 송이요리전문점, 나도송이제빵사, 송이향이 빵, 송이밥 시식, 송이차 시음, 다도체험, 양양전통음식 전시, 송이주막 등을 마련한다.

군은 지난해 양양송이축제가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자, 올해 송이축제의 군살을 빼고 체험행사 위주의 경제축제로 열기로 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조례 제정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등 규정

우리군이 자연재해 피해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우리군의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방재관련 협회나 학회, 관련 대학 및 용역 또는 연구기관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조사, 분석,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조사 분석된 결과물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고급어종 시마연어 남대천에 방류

양양연어사업소, 2만2천마리...1년 후 회귀



고급어종으로 알려진 시마연어가 지난 10일 양양남대천에 방류돼 연어 자원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 양양연어사업소(소장 홍관의)는 바다식목일인 지난 10일 동해안 고급 회귀어종인 시마연어 2만2,000마리를 양양남대천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시마연어는 양양연어사업소가 지난해 1월 부화시켜 17개월 동안 사육한 것으로 길이 15cm, 체중 30g 정도의 스폴트화(바다로 내려갈 준비가 됐을 때 몸 색깔이 변하는 현상)된 어린연어들이다.

시마연어는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연어과의 냉수성 어종으로 산천어와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만, 하천에서 일생을 보내는 산천어와는 달리 하천에서 부화해 바다로 내려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 온다. 수심 20~30cm 정도 되는 하천 바닥에 산란하며, 약 1,500~2,500개의

알을 낳는다. 현재 동해안에 회유하는 시마연어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일본에서 방류한 것으로 어업인들이 포획 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는 시마연어 모천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해마다 방류량을 늘리고 있다.

이날 남대천에 방류된 시마연어는 약 1주일 이내에 바다로 내려간 뒤 오호츠크해를 회유하면서 성장한 후 1년 만에 어미가 돼 모천에 오르는 특성상, 단기간에 상품화가 가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양양연어사업소는 방류 효과 조사를 위해 기름지느러미를 절단, 표지해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이 표지한 시마연어를 발견할 경우 사업소(033-670-162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산복지재단 어린이날 책 전달

양양관내 17개 초교...지봉스님 격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이 어린이날을 맞아 양양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무산지역아동센터는 지난달 30일 양양관내 17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총 1,414명에 게 학년별 권장도서 및

교직원용 책을 지원했다. 이날 도서를 전달한 지봉스님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교육에 열심인 선생님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책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양 해담마을 구름다리 관광명소 기대

탐방객들 편의증진...‘김영철 다리’로 불리기도

전국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양 서면 해담마을(서림리)에 청정하천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설치돼 관광명소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군은 ‘산소길 강원 300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면 내현리에서 정족산을 거쳐 해담마을에 이르는 10km의 등산로를 정비함과 동시에 8억원을 들여 탐방로를 연결하는 경관형 인도교량을 완료했다. 길이는 74m다.

이에 따라 해담마을 구름다리는 그동안 정족산과 벽실계곡(벽실골)을 거쳐 해담마을로 우회하던 탐방로를 곧장 하천을 가로지를 수 있어 탐방객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관광자원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구간은 해발 869m의 정족산 정상에 오르면 양양시가지와 동해안을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氣)를 받

는 명산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족산으로 이어지는 벽실계곡은 해담폭포와 한반도 지형을 닮은 소(沼)를 비롯한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인도교를 이용한 MTB동호인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탐방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담마을(이장 이상욱)은 지난 2007년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선정돼 5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마을공동 사업부지와 아르고라고 불리는 수륙양용 자동차를 구입해 처음으로 체험을 시작하는데 이어 정보화마을(2007년), 전통테마마을(2008년), 산촌생태마을



(2008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011년)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연간 40만명의 체험객과 7억원이 넘는 마을 소득을 올리는 전국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해담마을의 성장 뒤에는 지난 10년간 마을이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영철 전 마을 이장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김 이장의 공적을 기려 이 구름다리를 ‘김영철 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욱 해담마을 이장은 “구름다리 개설로 올 여름 피서철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즐기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0회 해난어업인 위령제 거행

현북면 잔교리 위령탑에서...유가족 지원 강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제가 지난 10일 양양현북면 잔교리 해난어업인 위령탑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해난어업인 위령제는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거행되고 있다.

양양군수협이 주관한 이날 위령제에는 유가족들이 위령탑에 헌화하며 바다에서 산화한 이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지난해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

은 7명의 위패가 새로 봉안돼 총 1,055위가 안치돼 있다.

강원도는 매년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현재까지 총 20억원의 기금을 조성, 지난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329가구에 자녀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부터 5년간 총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난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 시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11대 양양문화원장에 윤여준 씨 선출

“향토문화 창달 헌신”...오는 7월1일 임기 시작

제11대 양양문화원장으로 윤여준(65, 사진) 양양군자원봉사센터장이 선출됐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9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윤여준 자원봉사센터장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 민속문화 발굴연구 등 다방면에서 문화정책을 펼쳐 현대문화와 접목시키는데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양양문화원이 그동안 양동창 원장을 중심으로 사장돼 가던 전통문화를 발굴해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연구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향토문화 창달을 이뤄낸 만큼 앞으로 현대적 가치로 더욱 승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학교 프로



그램과 지역문화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문화환경 개선사업, 지역문화교육 강화 등 문화원 프로그램을 알차고 실생활에 접목시키 나갈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와 민속예술 등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문화체험과 연계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 명품화하도록 문화산업화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선사유적과 불교문화유적 등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전통과 현대의 문예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양문화원의 전

통을 소중하게 잇고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내도록 힘쓰겠다”며 “문화국민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이를 현대문화에 유기적으로 접목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준 당선자는 현북면 말곡리가 고향으로 강릉고를 졸업한 뒤 지난 76년 현북면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직을 시작한 뒤 사회과장과 민방위재난과장, 현북면장, 환경복지과장,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지난 2009년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양양군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매진해왔다.

신임 양양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부인 용상춘 씨(59)도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는 등 부부가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빨갭게 익어가는 앵두축제 ‘인기’

양양 현북면 명지리 지난 25일 축제 열어

뜨거운 태양아래 빨갭게 앵두가 익어가는 초여름, 지난 24일 양양 현북면 명지리 앵두마을(대표 이무영)에서는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을 위한 앵두사랑 축제가 열려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명지리 앵두마을 앵두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식전 축하공연은 생략한 가운데 오전에는 떡메로 쫄쫄떡치기 체험행사가, 오후에는 명지리 특산물인 한과만들기 체험, 트랙터마차로 명지리 마을 인근을 구경하는 트랙터 마차타기, 보물찾기, 장수풍뎅이 애벌레 잡기체험, 버들치 낚시 등 다채로운 시골 체험 행사가 열려 인기를 끌었다.

메인행사인 앵두따기 체험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돼 많은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청정자연을 만끽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추억



을 쌓았다.

한편 명지리(明池里)는 옛날 마을 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물안의 고기를 셀 수 있을 만큼 수명(水明)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물이 맑고 자연이 수려하며 특히 ‘명지리 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양송이 생산지 중에서 송이 향과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무영 명지리장은 “전국에서도 특별한 이색축제로 각광받고 있는 앵두축제가 올해도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서 인기리에 열려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한과공장 운영 등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테마를 더욱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훈련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

우리군의회 성명서 발표...“공항활성화 지장 및 주민피해 많아”

우리군의회가 정부의 김포공항 내 훈련용 경비행기(이하 훈련기) 및 비행훈련업체의 양양국제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군민은 정부의 김포공항 과밀해소를 위한 훈련용 경비행기 이전 및 비행훈련업체의 양양국제공항 이전계획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훈련기 이전 계획은 훈련기 전용 공항 설치 등 가장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등한시 한 채 소음 민원과 항공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할 수 없는 민원과 위험 전부를 전가시키는 무능한 정부, 안전 후진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거”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지난해 양양국제공항은 72.95

데시벨로 점차 높아지면서 항공기 소음한도인 75데시벨에 근접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양국제공항 주변에 양돈단지를 비롯해 전체 30% 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소음과 진동은 가축의 성장 및 번식과 양봉 관리 등에 많은 지장을 줘 주민복지와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항 주변 반경 3km 이내에는 초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학교로 확산될 경우 학생들까지도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또 “훈련기로 인해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부담과 위험이 증가된다면 정기선 취항 및 2018평창 동계올림픽 보조공항으로서 역할은 사실상 어렵게 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 수가 타 공항에 비해 적다는 이유만으

로 훈련기들의 난공불락이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훈련기 운영회사는 공익이 아닌 자사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업체이므로 사기업보다는 국가가 중요하고 국가보다는 국민이 우선한다”며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맞추어 조종사 교육 및 양성을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은 조종사 훈련 인프라를 갖춘 훈련용 공항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항공기 운항횟수가 점차 감소세에 있는 공항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강원도와 우리 양양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노선도 12개 도시로 확대되고 정기노선 또한 협의 중에 있는 등 공항활성화의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 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

스럽게 여기며 김포공항 훈련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를 온 국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간곡히 정부의 훈련기 양양국제공항 이전에 반대한다”고 건의했다.

우리군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훈련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공항공사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양양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 및 탑승인원은 304편에 3만8,748명으로 국내 15개 공항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운항횟수와 탑승인원은 270편에 4만1,680명으로 전년도 탑승객 총계를 이미 넘어서는 등 활성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불기 2558년 낙산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천년고찰 낙산사(주지 도후스님)는 이날 오전 11시 보타전에서 도후스님과 무문스님 등 낙산사의 대덕스님들과 기관단체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가졌다. 이날 봉축법요식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헌화 및 관불, 청법가, 봉축법어,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낙산사는 이날 지역사회에 공헌한 양양군농업기술센터 홍보기 기술지원과장과 윤여경 시설관리사업소장 등 34명에게 의상봉사상을 수여하고, 양양관내 중고교생 3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도후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화와 관불을 올린 뒤 세월호 침몰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4-4. 벼 베기

얼른 얼른 하더니
여기도
또 한 단
둥글 둥글
뭉어도
또 한 단.

온갖 정성 다한 보람 있어 들
넋에 서면 배부름을 느끼게 합
니다. 그동안 힘든 장면들 누렇
게 익은 「황금물결」따라 모두 사
라졌겠습니다. 낮을 들고 허리
를 굽혀 벼 베기가 한창 무르익
노라면 흥겨운 즉흥적 노랫말
이 저절로 서로 서로 이어갑니
다. 그러면서 「마당흥년」염려되

어 은근히 좋은 날씨 속에 한해
농사 마무리되기를 비는 마음
도 간절했다 하겠습니다. 진정
한 톨 쌀알 속에는 농부의 마음
이 깃든 진주알 보다 더 귀한 보
배로 여기며 먹는 이마다 감사
하는 마음 갖는다면 이 또한 참
된 도리가 될 줄 압니다.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⑤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 III.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 IV. 맺는 말

이번호 부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되짚어보기 논문을 실습니다.

(4)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 양주읍지(襄陽邑誌)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간다. 이는 미시령 길에 비해 50 리나 단축되는데 영(嶺) 아래에 예전에 역(驛)이 있었으나 관터는 비어있다. 골짜기와 냇물이 험하여 간성의 원암(元巖)으로 역을 옮겼다. 영의 북쪽에 온천이 있는데 박필정(1747년 양양부사 1755년 한성부우윤)이 이르기를 고성의 온천 온천수보다 못지않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5) 강원도지(江原道誌)

1940년 강원도지에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 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다.”라고 적었다.

3)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五色嶺

(1)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에 있는 문장들을 풀어보면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양양부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양양군 일대와 속초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양양읍 군항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지도 위쪽의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이 현재의 속초시(東草市)에 해당하며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양에 포함된 땅으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청초호(靑草湖), 쌍호(雙湖) 등의 석호(瀉湖)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 위는 설악산 일대이며 오색령·박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고개는 양구·인제·춘천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동해묘[(東海廟)동해신사, 양양읍 조산리]는 나라에서 봄가을에 향과 축을 내리어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낙산사를 비롯하여 신흥사·영혈사·개운사·명주암 등의 사찰이 있었다. 양양을 중심으로 표기된 영(嶺)을 보면 오색령(인제계), 박달령(춘천계), 조침령(춘천계), 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광여도(廣輿圖)

양양부(襄陽府)는 양양군과 영랑호 남쪽의 속초시에 해당하며 읍치(邑治)는 양양읍 군항리·성내리 일대이다. 고을의 진산(鎭山)은 읍치의 서북쪽에 있는 설악산(雪嶽山)인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색약수로 유명한 오색령(五色嶺)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읍치에는 토축(土築)과 석축(石築)이 섞여 있

었던 읍성이 있었음이 지도에도 보인다. 읍성의 오른쪽에는 동해묘(東海廟)가 표시되어 있는데 동해신에게 제사지내던 곳으로서 사전(祀典)에는 중사(中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위쪽에는 신라의 의상[義湘]625-702년]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낙산사(洛山寺)가 있고, 150m 아래쪽 절벽 위에 지어졌다는 의상대(義相臺) 등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서쪽의 백두대간 부근에도 신라 신문왕 9년(68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영혈사(靈穴寺)를 비롯한 사찰의 표시가 있다. 읍치 아래쪽에 있는 상운역(祥雲驛)은 15개의 속역(屬驛)을 거느린 찰방역이며 해안가에는 석호(瀉湖)에 해당하는 청초호·쌍호·포마호(靑草湖·雙湖·浦麻湖) 등이 보이고 있다. 지도 아래쪽의 동산현(洞山縣)은 고려 초에 병합된 폐현을 가리킨다. 양양을 중심으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인제계), 박달령(춘천계), 조침령(춘천계), 구룡령(강릉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도(靑邱圖)

조선순조 34년(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지도책이다.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方眼地圖)로서, 방안의 실제거리는 남북이 100 리, 동서가 70 리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읍치 산천 군현경계 도로 면 창고 서원 향교 누정 역 고개 교량 봉수 도서 진 시장 등이 그려져 있는 전국지도로서 대동여지도 제작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양양을 중심으로 한 지도에 표기된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형제현·연수령·조침령·소동라령[險阻而廢]·구룡령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철종 12년(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의 대축적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순조 34년(1834년)에 김정호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를 27년 후에 증보 수정한 대축적지도로 분첩 절첩식 지도첩이다. 우리나라의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끊어 19판으로 구분했다. 동서방향은 구획된 판을 접어서 연결시켜 1첩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동서의 방향을 연결시킨 각 첩을 펼쳐서 순서대로 이어 대면 연속된 남북을 볼 수 있도록 한 전국지도이다. 양양을 중심한 일부분의

영(嶺)을 살펴보면 오색령·필여령·구룡령 세 개의 영(嶺)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5)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

1872년의 지방지도(총459매)는 병인 신미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은 후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읍치의 관청 건물과 각면의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창고 장시 역원 도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제단 누정 서원 고적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이 망라되어 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동해신묘의 규모와 낙산사 관음굴 의상대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양양읍 지도에는 북쪽에 오색령·필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네 개의 영(嶺)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제현(麟蹄縣) 지도에는 동쪽으로 오색령(五色嶺) 양양계(襄陽界)라 하여 오색령(五色嶺)이 양양에 이르는 주요 통로임을 기록하고 있다.

(6) 其他地圖

조선중기 이후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표기된 지도는 총43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앞에 기록된 해동지도 광여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양양읍지도 등 5개지도 외에 38개 지도를 열거하면 관동지도(1712년, 古4709-35) 여지도(1736~1767년, 古4709-68, 양양부, 인제현)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5년) 해동지도(1750년, 강원도, 인제현) 조선지도(1750~1768년, 奎16030)선역도(1760년대) 팔도분도(1758~1767년) 팔도지도(1758~1767년, 古4709-23) 팔도지도(1767~1778년, 古4709-14) 동역도(1767년, 古4709-27)지승(1776년, 奎15423, 강원도, 양양부, 인제현) 조선팔도지도(古屏912.51-J773-강원도, 황해도) 조선팔도지도(1776~1785년, 古4709-54, 강원도) 좌해분도(古4709-99) 팔도지도(1790년, 古軸4709-48)여지도(1789~1795년, 古4709-78)여지도(1795~1822년, 古4709-37) 해동지도(1800~1822년, 古4709-61, 강원도) 광여도(1800년, 古4790-58, 관동도, 인제현) 좌해지도(1830년, 奎12229) 청구도(3책제 15층 9판) 청구요람(1834년) 청구요람(1책제 15층 9판) 대동방여전도(12첩 2면, 강원도) 동여도(1857년) 1872년 지방도(인제현) 지도(古4709-92, 강원도) 좌해전도(1849~1863년) 조선여지도(1894년) 조선전도(1894년) 대한전도(1899년) 대한지지(1906년) 대한신지지부지도(미상) 등이다.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1.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 · 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련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 ▶ 물론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정도 합법적이고 선거에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의 줄 세우기 · 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련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4.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 ▶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5.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 육상경기에서 선수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미리 앞서서 나가거나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달린다면 그 경주는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6.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중대선거범죄만을 단속합니까?

-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 선관위는 선거구내 후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방 ·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 · 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 단속활동

1.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 ▶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 정착의 과제를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별도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초로 그 조사 · 단속활동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1997년 선거범죄협약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권을 신설하면서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선거현장에서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며, 위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선관위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 조사권의 주요 내용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 · 조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등입니다.

3. 장소 출입에 관하여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 · 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인신의 체포 · 구속 또는 압수 · 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장소에 출입할 경우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 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5. 동행 또는 출석 요구에 관하여

-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 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현행범인 또는 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질문 · 조사에 관하여

- ▶ 범죄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질문 · 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7. 증거물품 수거에 관하여

- ▶ 범죄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질문 · 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8. 현장의 조치에 관하여

- ▶ 범죄혐의의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질문 · 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1. 투표시간은?

- ▶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 : 5월 30일~31일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7.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 ▶ 선거인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11.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 ▶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12.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어도 무효가 아닌가요?

- ▶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4.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 ▶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15.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TV, 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1.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유권자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선거마다 투표소가 바뀌나요?

-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며,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투표소를 선정할 때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고려하나요?

- ▶ 선관위는 투표소를 선정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및 투표소 변경 등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고 대책은?

-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6. 몸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차량제공을 하나요?

- ▶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활동보조 인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고용하고, 장애인유권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 차량을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장애인유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그 밖에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 적정한 투표소 설치 건물이 없는 주택밀집지역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유권자를 위하여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방침입니다.
-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으로는 투표소 위치를 직접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투표소에 비치하며,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기재)과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은?

- ▶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하여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 ▶ 또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9.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된 투표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베트남어·베트남어)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실시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 선관위는 2012년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실상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유권자는 지역 제한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투표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 안내

1.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주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원앙어선 등에 승선하고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의 경우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해당 선박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 일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해도 괜찮은가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선거인이 직접 팩스를 이용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정상적인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봉투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0. 대리투표를 단속하기 위한 선관위 활동 계획은?

▶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I 종전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사전에 별도의 부재자신고 후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구·시·군 단위로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 다만, 거소투표 신고대상(§38(거소·선상투표신고)④)은 거소투표 가능
- 이에 따라 종전 선거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군부대 주변 지역, 대학교에 설치·운영한 부재자투표소는 금번 지방선거시부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II 사전투표 기간·장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 '14. 5. 30(금)~31(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장소 ⇨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국 사전투표소 검색 가능
-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투표관리

1.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 선관위에서 위촉합니다.
-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 ※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일반인 투표사무원 비율은 22%이었음.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 참여하나요?

▶ 투표참관인 수는 투표소마다 8명입니다.

5. 투표참관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각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 ▶ 정당 또는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8명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6.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왼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합·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8.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하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그 봉인·봉합상태를 확인하는 등 투표함 이동 상황을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하여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9.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나요?

▶ 투표지에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입니다.

10.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우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3.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4. 일반 국민이 직접 개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5.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 개표는 전자개표로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집계합니다.

8. 투표지분류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서는 제178조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9.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외부 해킹이 가능한가요?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10.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 선거 전에 주요 정당, 학계, 정보통신 보안관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점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 생성에 제1·2당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11.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를 인터넷에 바로 공개하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공표에 따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확정된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 PC(선거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12.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 미분류투표지는 무엇인가요?

▶ 미분류투표지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등으로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등의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를 말하며,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3.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4.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 방송사별로 전송받은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거나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거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17.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18.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19.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20.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 지방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을 접수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C절전 소프트웨어 무료 내려받기로 전기요금도 에너지도 절약하세요!

- PC절전 SW(그린터치 v2.0) 소개
 - PC절전 소프트웨어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점심식사, 전화통화 등PC를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전력을 자동으로 줄여 전기요금을 절약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 PC절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낭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발생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하루 3시간 절전 시 주택용 요금제 기준 월 최대 4,0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 PC절전 SW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 ①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접속
 - ② 메뉴 "지식센터" → "전기생활" → "PC절전 소프트웨어" 접속
 - ③ 페이지 하단 "설치하기" → 지역선택(거주지역) → "다운로드"
 - ④ 파일 다운로드 → 압축해제 후 실행 → 설치완료

국제운전면허증 이제는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여권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시면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4. 4.28(월)~

■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여권용), 수수료 7,000원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확인하세요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7월 1일~)
 -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 본인부담률 50% 적용,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찾아갑니다.(7월 1일~)
 - 치매 특별 등급(5등급)을 신설하여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 환자 본인부담 15%, 경증치매환자 약 5만명 추가 혜택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등급을 기존 3등급 → (3~4등급)으로 세분화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1월 1일~)
 - 개인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필요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으로 쾌적한 입원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이 확대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총 33개 병원(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확대됩니다.(하반기 중)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의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 2015년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 편의점에서 사회보험료 현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5월말~)
 -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전국 5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납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 속초지사 ☎1577-10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협약체결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5월 7일 오전 10:00 2층 소회의실에서 양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성호)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각적인 자살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시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운

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 시 신속한 출동 및 병원 이송과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상담과 상호 정보를 공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문의 : 속초경찰서 아동청소년계 634-0249

2014 UN 공공행정포럼 행사개요

- 추진 배경
 -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인 UN공공행정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행정한류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활용

〈 UN 공공행정 포럼 〉

- ▶ 의의 : UN공공행정의 날(6.23)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행정분야 우수 사례를 시상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 공공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행정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
 - ※ 포럼과 함께 UN공공행정상(매년) 및 UN 전자정부 평가(2년주기) 시상
- ▶ 역대 개최지 : '03~'06년 뉴욕/ '07년 오스트리아/ '08~'09년 뉴욕/ '10년 스페인 / '11년 탄자니아/ '12년 뉴욕/ '13년 바레인

- 일시/장소 : 2014. 6.23(월)~6.26(목)/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 참석자 : UN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인사 약 100개국 1,000명
 - (해외초청인사) UN 등 국제기구 수장, 각국 고위급 대표, 관련 분야 석학 등
 - (국내초청인사) 대통령, 관련 국무위원, 유관기관장 등
 - ※ '13년 바레인에서 개최시 약 100개국 800명 참석
- 주제 :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Innovat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e People)
- 주요 일정
 - (공식행사) 개·폐회식, 전체회의, 워크숍, 전문가 미팅, 양자회담, 장관급라운드테이블, 공공행정상 및 전자정부 평가 시상
 - (부대행사) 문화행사, 전시, 스터디 투어, 오·만찬 등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선진행정 및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 전자정부, 정부 3.0 등 행정한류 확산 및 IT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

양양읍 공고 제 2014-2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일

양 양 읍 장

1. 사 업 명 : 『이복우』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율리 371-10번지
3. 도로길이 : 8.4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34.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971.0	34.0		
양양읍 율리	371-10	대	971.0	34.0	최소부	도로지정동의

양양읍 공고 제 2014-3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일

양 양 읍 장

1. 사 업 명 : 『노송현』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97번지
3. 도로길이 : 27.0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83.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83.0	83.0		
양양읍 서문리	97	대	83.0	83.0	노송현	도로지정동의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주택연금'안내

-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 부모봉양과 자식교육 후 집 한 채만 남은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부부가 평생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 집값이 떨어져도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약속된 연금을 받고, 한 분이라도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더 받으실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혹시 집값보다 덜 받고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국가보증제도.
- 혜택 :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면제,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연금지급, 평생 거주 평생 소유권 보장, 국가보증으로 절대 안전, 연금소득공제 등

■ 일반형 주택연금이란?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예시>

(단위 : 만원)

가입연령	주택가격	1억	3억	5억
60세		23	69	114
65세		27	82	137
70세		33	100	167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2014. 1월 기준)

■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이란?

-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연령별로 인상된 연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하고, 종신토록 거주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② 1가구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 소유 및 거주, 전세 및 권리침해 없는 주택 등은 기존 종신방식과 동일
 - ③ 부부 중 연소자가 지급기간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간별 선택가능 연령>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65~74	60~74	55~68	55~63	55~57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월지급금 예시:가액 2억 기준, 단위-만원>

연령	종신	10년형	15년형	20년형
65세	55	94	71	60
70세	67	106	80	선택불가
74세	79	117	88	선택불가

※ 2014년 3월부터 가입요건 완화 ⇨ 2주택자도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 가능 (주택면적이 1/20미만인 상가주택은 주택 수에 불 포함하고, 주택면적이 1/20이상인 상가주택 1채 소유자도 주택연금 신청가능)

한국주택 금융공사 강원지사
(담당 이상규 ☎ 033-259-3615, 010-5540-3008)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
- 신고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지역산업맞춤형 채용약정과정 교육생 모집

모집분야	지원 자격
자동차부품 설계제작	○ 만 15세 이상 청년층 ○ 강원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15년 2월 이전)자 우대선발
원서 마감	현재 접수 중 (2014년 6월 5일 까지)
입학 특전	○ 전원 대한상공회의소 우수기업체 취업알선 ○ 국가기술자격증취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국가 지원 ○ 매월 교육훈련장려금 지급 ○ 귀가차량 운행(매월 격주 금요일 서울, 춘천, 원주방면)

- 접수 : 강원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 문의전화 033)430-9720~3 http://kw.korchamhrd.net

양양우체국 '3중5본' 실천 다짐

우편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캠페인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은 지난 14일 오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3중5본'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

양양우체국은 우편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우편물을 소중히', '이륜차

를 소중히' 여기는 3가지 중요함과 '주행 중 감속하기', '운전 중 헬멧쓰기', '적재함 덮개 덮기', '이륜차 청소하기', '시동키 휴대하기' 등 5가지 기본을 지키자는 이른바 '3중5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사업단 청렴교육

김덕만 교수 초청... '공직자 행동실천 중요'



청렴교육자로 잘 알려진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가 지난 23일 양양 서면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을 찾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지구촌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강국이 됐지만 국가 청렴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초고속 압축 성

장 과정에서 유발된 관행적 부패를 제거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공직자들이 부패를 하지 않으려는 인식전환과 행동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김 교수는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 국민권익위 등에서 7년간 대변인을 지내면서 공직기관의 청렴교육을 100여회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부패방지 칼럼니스트로서 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양양향교 춘기석전제 봉행



양양향교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유림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자 탄신을 기리는 2014년 춘기석전제를 봉행했다. 정상철 양양군수가 공부자 탄신일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다.

첫 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가져

양양고 등 57명에게 5,400만원 전달



양양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양양고·여고 및 양양출신 대학생 등 57명에게 5,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양동창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현재 양양군인재육성장학금은 총 38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기금모금에 나서고 있다.

양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속초경찰서 업무협약



양양군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성호)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속초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성호 센터장과 김창수 속초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자살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개입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김유근 육군참모차장 명예군민

양양군, 구호활동 공로 양양군민패 전달

양양군은 폭설과 수해,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준 김유근 전 육군 8군 단장에게 명예 양양군민패를 수여했다. 고완주 양양부군수는 지난 14일 현재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근 중장을 직접 예방하고 그동안 8군단장 재임 시절 재난재해 구호활동 및 지역 봉사에 헌신 공로를 인정해 명예군민패를 전달했다.



사골 팩 400인분 기탁

양양한우협회, 양양군에 전달

전국한우협회 양양군지부(지부장 박병인)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양양군에 사골 팩 400인분(16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박병인 지부장은 고완주 부군수를 방문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골 팩 400인분을 전달했다.

박지부장은 "우리 한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사골팩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온정을 전하도록 살피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주)' 창단 무대공연 화제

주역 이상준 단장 구슬땀...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1인 다역

양양에 등지를 틀고 그동안 연극단과 풍물단 양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상준(61, 사진) 작가가 오랜 숙원인 양양극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무대공연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이상준 단장은 지난 3월 단원 17명을 주축으로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주)'라는 연극단을 창단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별공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양양문화원 실버학교 연극반 연출을 맡아 '양양쾌지나'를 무대에 올리면서 호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연극단을 창립, 무대공연을 통해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양양극단은 유명드라마 작가출신인 이상준 단장의 지도에 힘입어 자신들이 맡은 배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내로라하는 연극단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어 이 단장은 자신의 양양문화예술 부흥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 산 양양문화원의 주선으로 실버연극단을 창단한 뒤 '양양쾌지나'를 무대에 올리면서 주민들에게 연극으로



행복한 생활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2월 29일 양양쾌지나를 첫 무대에 올린 이래 지난해까지 속초, 고성, 강릉, 춘천, 인제 등지에서 20회에 이르는 공연봉사를 한 데 이어 강릉단오제, 현산문화제, 인제빙어축제 등 굵직한 향토축제에도 초청돼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이런 노력을 발판삼아 올해는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주)'라는 극단으로 정식 창단한데 이어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새 작품 '미시리'를 통해 찾아가는 연극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주)'는 이상준 단장을 주축으로 성설극장 마련을 목표로 연극봉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유료공연도 계획하면서 못다 이룰 것만 같았던 꿈을 차곡차곡 실현해가고 있다.